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31일

발 의 자: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중화, 신복자,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다.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에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1조).
- 라. 관련 자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이용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고 한다) 디지털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명 이내

2. 디지털 의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

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9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4. 제11조에 따른 교육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은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제11조(교육)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운영 및 전문가 수당 등 비용 발생
2	제8조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디지털 의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향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¹⁾
3	제9조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도입여부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제11조(교육)	○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11조(교육)

나. 전제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5조의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 중 3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제11조(교육)은 매년 하는 것으로 전제
- 교육 비용은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활동수행비 자체교육 비용을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1) 참고자료로 2024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서를 첨부하였음(붙임1)

○ 디지털의정위원회 = 19,3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6,000천원+3,300천원

- 참석수당 = 16,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8명×2회×5년

※ 지급인원 : 위원 11명 중 공무원(당연직) 3명은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3,3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1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교육 비용은 2025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활동수행비 자체 교육 비용(27,000천원)을 준용

[붙임 1] 2024년 서울시의회 의정정보화시스템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 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10종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 전문 업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마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2022. 4.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대상사업 : 전자회의시스템, 의안처리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회의록시스템, 화상회의중계시스템, 관광관영상송출시스템, 의정플러스시스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시스템, 생중계자막서비스,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다기능사무기기, 비용추계시스템 등
- 추진방법 : 전문업체와 연간 유지보수계약
- 사업의 주요내용 :
 - 전문기술인력 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상주 또는 정기방문)
 - ※ 본회의(정례회, 임시회) 기간 상주 및 사전 점검, 신속한 운영 지원
 -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최적의 상태 유지 및 장애 사전예방
 -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 등 신속한 장애조치
 - 의정정보시스템 지속적 보완, 기능개선 실시
 - 서버·통신장비 통합 유지보수 실시
 - 다기능사무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실시
 - 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중계 및 영상편집 운영

□ 추진경위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저장장치, DB,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시의회사무처 직원 업무용 PC 소모품 지원
- 시의회 사무처 의정정보시스템 구축(11`중)

[참고] 2024년도 서울시의회 의정정보화시스템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1,080,455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분야별 예산 구성

- 사무관리비(9,460천원 : HDD, 파워 등 전산소모품 구입 등)
- 공공운영비(1,070,995천원 : 전자회의시스템, 의정플러스/의정활동지원시스템 등 유지보수 등)